자료집

시민에게 겨눠진 무기:
경찰무기 수출과
경찰 무력 사용에 대한 공론장

일시 | 2025년 7월 21일(월) 오후 7시
장소 | 인권재단사람 사람홀
주최 | 전쟁없는세상

프로그램

1부. 경찰무기 수출과 경찰 무력 사용의 현실

최근 국내 경찰무기 및 경찰 무력 사용 동향 - 랑희 (공권력감시대응팀/인권운동공간 활)
경찰 무력 사용의 국제 기준과 시민의 권리 - 최석군 변호사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한국의 경찰무기 수출과 민주주의 - 쥬 (전쟁없는세상)

2부. 숙의 토론

최근 국내 경찰무기 및 경찰 무력 사용 동향

랑희 (공권력감시대응팀/인권운동공간 활)

1. 집회·시위에서의 경찰장비 사용의 역사적 변화

1) 최루탄과 백골단

1960년대처럼 더 이상 총으로 저항자들을 제압할 수 없게 되자 최루탄은 독재 권력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진압하는 무기이자 국가폭력의 상징이 되었다.[1]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군사정권에 맞서던 시절 최루탄은 학교 밖으로 진출해 거리로 나서지 못하게 막는 전술로 사용되었다. 시위대에 최루탄을 쏘며 진압하고 체포했던 경찰폭력은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다.

우리나라의 최루탄은 대체로 총류탄(총기에 의해 발사), 수류탄(손으로 투척), 가스살포 등으로 나누어진다. 원통형의 발사형 최루탄인 '총류탄'(SY-44)은 직격탄으로도 불리었는데, 최루탄 사용량의 52%로 가장 많은 피해를 낳았다. 45도 상공으로 발사하는 방식이나 직격으로 발사하는 문제가 많았다. 1990년 SY-44보다 폭파할 때 파편 효과를 줄이도록 설계한 KP1, KP2 최루탄을 개발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최루탄에 의한 부상은 계속 이어졌다.

△총류탄 (SY-44)

△총류탄 (KP1)

△총류탄 (KP2)

1) 물론 60년대에도 최루탄은 사용되었다. 1960년 자유당 정권은 3.15 부정선거에 규탄하는 시민들에게 최루탄을 사용했고, 이때 실종된 마산상고 학생 김주열은 4월 11일 마산 중앙부두 앞바다에서 알루미늄 재질 최루탄이 눈에 박힌 변사체로 발견됐다.

△SY44 발사총

수류탄처럼 투척해서 사용한 KM25는 사과와 비슷해 '사과탄'이라고 불리었다. 주로 근접거리에서 투척, 시위대를 해산시키거나 주동자를 체포하는데 사용했다. 근접폭발 시 화상이나 파편에 의한 상처를 입기 쉽다.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 파편이 박혔을 경우 엑스레이에 잘 나타나지 않는다.

△KM25

다연발탄은 차량에 탑재된 발사체에서 64발 한 세트를 5~6초 안에 연속 발사할 수 있다. 발산된 최루탄이 이리저리 움직인다고 해서 '지랄탄'이라고 불렸다. 대규모 시위의 군중 해산용으로 사용했다.

△다연발 가스차[2)]

2) 사진출처: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040414.010271211200001

가스살포 방식은 차량에서 연막액과 최루액을 1대3의 비율로 섞어 태우면서 최루가스를 배출하는 것이다. 일명 '페퍼포그'라고 불렸다. 시위대 안으로 들어가서 군중을 분산시키기 위해 사용했다.

△ 페퍼포그

1987년 6월 9일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에 맞아 쓰러진 사건은 6.10민주항쟁을 전국적인 시위로 만들어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3]을 이뤄냈고, 최루탄에 대한 퇴출 요구를 본격화한 계기가 되었다.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에 쓰러지자,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는 '최루탄 추방대회'를 열었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 등의 시민단체는 최루탄 생산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삼양화학[4]에 대한 항의운동과 폐업운동을 벌였다. 최루탄의 뇌관을 생산한 (주)한국화약(현재 한화)에 대한 항의로 한국화약 그룹의 생산품에 대한 불매운동도 전개되었다. 반공해운동도 최루탄의 문제를 알리는 소책자[5]를 시민들에게 배포하는 활동을 했다.

당시 사용된 최루탄은 주로 CS 가스라고 불리는 2-클로로벤잘말로노니트릴(2-chlorobenzalmalononitrile)이 주성분으로 피부와 점막 등에 강한 자극을 준다. 특히 눈에 즉시 강하게 작용하는데 아주 적은 농도에서도 화끈거림과 눈물 흘림을 유발하여 대상이 눈을 뜨지 못할 정도로 심해진다. 또한 심한 기침, 코 점액 분비, 방향감각 상실, 호흡 곤란을 초래한다.

CS 가스를 개발한 영국 포튼연구소의 최루탄 특허신청 설명

> 눈의 통증, 눈물, 눈꺼풀의 경련을 일으키는 외에도 코, 목, 가슴에 찌르는 듯한 통증을 일으키며 노출시간이 길수록 통증이 심해져 질식감이 나타난다. CS의 농도가 높으면 격

3) 1987년 12월 16일 직선제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
4)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에 사망한 1987년에는 최루탄 사용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였다. SY-44는 삼양화학이 생산한 최루탄이었는데 경찰에 연간 200만 발 이상을 납품했다. 삼양화학의 한영자 회장은 1987년에 개인소득세 납부 1위를 기록했다.
5) 공해문제연구소와 공해추방운동청년협의회가 공동으로 <피눈물 흘리는 민주주의!>, <최루탄! 그 죽음의 옷을 벗긴다>라는 제목의 소책자를 만들어 시위 현장에서 배포했다. 이 책은 당시 대단히 인기 있는 책이었다고 한다.

렬한 기침이 나오고 구토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복합적 효과로 인해 0.1~1PPM이면 가장 악착같은 사람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을 수초이내에 흩어지게 한다.

이런 최루제는 1925년 제네바 협약[6], 1993년 화학무기금지협약(CWC)[7]에 따라 전쟁에서 사용이 금지되었다. 하지만 최루탄, 최루액은 일반적으로 비살상 무기로 인정되어 많은 국가에서 치안용으로 사용한다.

경찰은 최루탄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겠다며 1989년 물대포 2대를 도입했다. 그러나 최루탄은 6.10민주항쟁 이후에도 집회·시위 해산을 목적으로 계속 사용[8]되었고, 1998년 만도기계 파업 진압을 마지막으로 경찰은 최루탄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선언 이후 최루탄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최루액의 형태로 분사기와 물대포에 사용되었다.

2) 최루탄 대신 곤봉과 방패

■ '인권'을 강조한 김대중, 노무현의 반인권적인 폭력진압

김대중 정부의 「새로운 집회시위 관리 방침」은 합법적인 시위는 적극적으로 보장하되 불법폭력시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으로 합법적인 집회가 평화적인 집회인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과거의 화염병과 최루탄이 맞서는 집회·시위 관리 방식을 개선하겠다며 1999년 '무(無)최루탄' 원칙을 천명하고 '신(新) 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새로운 진압 대책으로 여경을 시위대 전면에 배치하며 질서유지선을 통한 관리를 시도했다. 그러나 불법집회가 예상된다고 판단되면 신고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금지통고하고, 집회 장소 주변에 대한 검문검색과 출발지에서의 차단, 집회 장소 집결차단을 통해 집회·시위가 불가능하게 하거나 강력히 대처하여 조기에 진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최루탄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선언 이후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경찰의 물리적인 폭력이었다. '인권'이 중요한 상징이었던 김대중 대통령은 무최루탄 원칙을 되돌릴 수는 없었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맞서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경찰기동대의 공격적인 진압이 필요했다. 2000년 롯데호텔 파업에 경찰특공대를 새벽에 투입해 섬광탄과 방패를 사용해 진압했고, 2001년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투쟁에 경찰기동대의 무차별 폭력으로 9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경찰의 폭력진압이 계속되자, 경찰은 무최루탄 원칙이 폭력진압을 부추긴다며 최루탄을 다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고, 사회운동 진영에서는 경찰청장 등 진압 관련자 23명을 집단 폭행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9].

'인권 경찰'을 표방했던 노무현 정부 시기 경찰의 집회 진압으로 사망한 사람이 3명이나 되었다. 2005년 '쌀 비준 반대' 시위를 벌이던 전용철 농민이 경찰 진압 과정에서 중상을 입고 병

6) 제네바 의정서는 사용만 금지할 뿐 개발, 생산, 비축을 금지하지 않는다.
7) 화학무기금지협약은 독성 화학물질 및 관련 장비의 개발, 생산, 비축, 이전, 사용을 금지하고, 기존의 화학무기를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제 군축 협약이다. 대한민국은 CWC 서명국이며, 1997년에 비준했다.
8) 97년 한 해에만 11억 개가 넘는 최루탄을 쏘았다. 98년에는 그보다 적지만 3천7백만 개를 쏘았다.
9) 전국민중연대는 무최루탄 원칙 선언 이후 약 2년동안 여덟번의 대규모 시위 강제진압 과정에서 경찰 폭력으로 발생한 민간인 부상자(전치 3주 이상)가 모두 973명이라고 주장했다.

원 치료 중 뇌출혈로 사망했고, 홍덕표 농민 역시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 숨졌다. 특히 홍덕표 농민은 경찰을 피해 달아나던 중 경찰의 방패에 목덜미 등을 가격당하여 경추(목뼈)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해산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진압한 이 집회에서 부상자가 무려 147명이나 발생했는데 진압봉, 방패 사용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10] 2006년 포항 건설 일용노동자들의 포스코 점거농성에 경찰은 단전과 단수, 음식물 반입을 차단하자 건설산업연맹이 파업지원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폭력적으로 강제해산 당했다. 15여 명의 집회 참가자가 대부분 안면과 머리에 상처를 입는 부상이 발생하였고 하중근 조합원은 경찰의 방패와 소화기에 머리가 찍혀 중상을 입고 뇌사상태에 빠진 지 17일 만에 사망했다.

진압을 위한 장비와 차단을 위한 컨테이너를 적극 사용하기도 했다. 2005년 APEC 정상회의 집회를 차단하기 위해 200여 개 중대의 경력과 물대포, 헬기 등 장비를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컨테이너 장애물을 설치했고, 오산·세교 택지지구 망루 농성진압을 위해 경찰특공대가 2개의 컨테이너로 진입하는 진압작전을 진행했다. 2006년~2007년 열린 한미FTA협상 저지 투쟁에서도 경찰은 컨테이너로 저지선을 구축하고 물대포를 쏘며 진압했다. 집회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집회를 금지하고 전국 각 지역에서 출발하는 버스를 포위하고 가로막아 출발하지 못하게 하거나, 집회 참가를 위해 상경하던 농민들을 영장 없이 강제 연행했다. 경찰의 봉쇄에 게릴라식으로 기습 집회가 열리자 물대포를 쏘며 진압을 시도했다.

■ 장비를 무기화한 기동경찰

무최루탄 선언 이후 경찰의 진압 방식은 단지 최루탄을 쓰지 않을 뿐이지 집회에서의 경찰의 폭력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시위대와 경찰 사이의 간격이 현저하게 좁아지고 직접적인 물리적 충돌이 가능한 현 상태에서, 경찰폭력의 주된 무기는 '방패'가 되었다. 특히 주요 집회 진압에 등장하는 서울지방경찰청 1기동대(1001, 1002, 1003)의 공격적인 진압이 심각한 문제였다. 1기동대는 곤봉과 방패를 이용해 목과 머리에 가격했고, 집회 참가자들의 가장 많은 부상은 안면부와 두부의 열상(laceration)이었다. 2003년 인권단체들은 노동자 집회에서 반복되는 경찰의 폭력과잉진압 상황을 모니터하고 경찰의 폭력을 고발하며 '1001기동대 해체'를 요구했다. 2005년 전용철, 홍덕표 두 농민의 사망으로 기동단 해체 요구가 다시 높아졌고, 전·의경 부모님들은 '폭력 시위 추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인권단체들은 '폭력 시위'가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 전·의경 인권침해 개선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전·의경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경제도 폐지 △경찰기동대 해체 △집회·시위 진압에 의경 동원 금지 △의경 부대 내 인권침해 상황 개선을 요구했다.

10) 경찰은 농민집회 폭력진압이 있기 전인 10월 4일을 '인권 경찰의 날'로 제정하는 '인권경찰 비전선포식'을 열었다. 이날 경찰관이 지켜야 할 직무기준으로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경찰청 훈령)을 제정, 선포했다. 인권활동가들은 현장에서 '인권없는 인권경찰'이라고 쓰여진 옷을 입고 침묵시위를 벌었다.

△부안에서 핵폐기장 반대시위가 시작될 무렵인 7월 22일 군청앞에서 시위대를 저지하던 장신의 경찰이 도망치는 시위자의 뒤통수를 방패로 내려찍고 있다[11].

3) 고도화되고 증가하는 장비들 - 차벽, 물대포, 최루액, 채증

노무현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참가자 처벌을 위한 채증 강화와 민사상 배상 청구, 시위 진압 장비 확충 등이 이어졌다. 2002년부터 채증용 캠코더를 보급하면서 채증장비는 꾸준히 증가했고 2008년 전·의경을 대체[12]할 경찰관 기동대를 창설했다. 소규모 경력으로도 효과적인 제압을 하기 위해 차벽트럭, 이격장비, 물포, 다목적 바리케이드 등 장비가 중심이 된 현장 대응으로 전환했다. 장비에 대한 규율과 통제가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장비사용의 안전성 문제와 최소한의 사용 원칙이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는 합법보장, 불법필벌'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경찰기동대를 집회·시위관리의 전면에 내세우면서 해산이 아닌 검거 위주의 대응 방식으로 전환했으며, 채증을 통해 사법처리했다. 박근혜 정부도 유사하게 '준법보호·불법예방'이라는 원칙을 세웠다. 특히 시민의 불편을 이유로 '비폭력 불법 집회시위'도 적극적으로 법집행하는 것으로 대응 기조로 삼았다. 집회의 권리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공권력 무력화 시도로 간주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집시법 TF', '집회시위 현장 법률대응팀'을 운영하고 경찰관의 피소에 법률지원과 비용 지원을 적극 할 것을 주문했다.

■ 2008년 촛불집회

촛불집회는 5월~7월 첫 주까지 거의 매일 저녁에 열렸고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했다. 10만 명이 넘게 참여한 5월 31일 청와대를 향하던 참가자들에게 경찰은 차벽과 살수차로 막아섰지만, 참가자들은 "온수! 온수!"를 외치며 거리를 떠나지 않았다. 6월 1일 새벽 경찰기동대가 참가

11) 사진출처: 오마이뉴스 권우성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157559
12) 1971년 창설돼 42년간 유지됐던 전투경찰 순경제도는 2013년 폐지되었다.

자들에게 소화기를 시위자들의 얼굴에 분사하고, 방패와 곤봉을 시위자들에게 가격하며 폭력적으로 진압했다[13]. 6월 28일~29일이 가장 폭력적인 진압[14]이 있었고 그 결과 많은 시민이 부상을 입었다.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와 소화기를 사람들에게 겨냥해 쏘았고 물병, 돌, 쇠뭉치 등 마구잡이로 던졌다. 진압을 막기 위해 비폭력 불복종행동으로 서로 팔짱을 끼고 거리에 누운 50여 명의 사람들을 200여 명의 경찰이 방패로 찍고 짓밟고 지나가면서 진압했다. 수백 명의 경찰이 기습적으로 시위대에 돌진하며 방패와 곤봉으로 구타하며 연행했다. 이후 형광물질, 최루액을 넣은 물대포와 소화기까지 동원해 진압했고 무차별 체포와 취재 방해도 이어졌다.

2008년 촛불집회 부상자는 정확하게 집계되지는 않지만 2,000~2,400명으로 추산한다. 이 부상의 상당수는 방패와 진압봉으로 가격당한 경우이며 물대포와 소화기 사용으로 입은 부상도 있다. 부상자의 80%가 안면부위 및 두부 부상이고, 그중 절반 이상이 후두부 부상이다. 이 부상의 의미하는 바는 단순 해산이 아니라 추적 폭행으로 쓰러진 사람을 가격하거나 도망치는 사람을 추적해 후두부를 가격했다는 것이다.

△ 2008년 6월 1일 아침 후퇴하는 시위자를 경찰봉으로 뒤에서 가격 (사진: 권우성 기자)

촛불집회의 폭력진압은 다시 전·의경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소속 전투경찰이 "촛불시위 진압에 나서는 것은 양심에 반하는 일"이라며 육군전환복무 신청하면서 '전·의경제도폐지를 위한 연대'도 설립됐다. 전·의경폐지연대는 전·의경들에 의한 심각한 인권침해는 육체적 정신적 위해뿐만 아니라 평화로운 집회문화 확산에 저해가 되고 직접민주주의를 통한 소통에 방해가 된다고 했다. 또한 전·의경들이 처해있는 열악한 상황은 전·의경 개개인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임을 지적했다. 집회·시위에 대한 과도한 대응으로 인해 근

13) 살수차, 소화기 등 경찰의 과잉 진압과 촛불시위를 불법시위로 규정한 경찰에 유감을 표명하며 경찰청 인권위원회 소속 14명 위원 전원이 사퇴했다.
14) 대책회의는 이날 집회에서 "가벼운 부상자만 300여 명, 병원으로 실려 간 환자들만 100여 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촛불집회 중 최대 규모 부상자수였다.

무시간은 지나치게 길어지고 기본적인 숙식 또한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2009년 5월에는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에 맞선 노동자들의 77일간의 점거투쟁이 벌어졌다. 사측의 구사대와 경찰이 협력해 파업노동자와 연대하는 집회 참가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점거농성 중 헬기 저공비행으로 위협하며 헬기에서 최루액을 직접 살포하거나 최루액이 든 비닐봉지를 투하[15]했고, 살수차에 최루액을 넣어 살수했다. 대량 살포된 최루액에 지속적으로 노출[16]된 노동자들은 물집이 생기고 살갗이 벗겨지는 급성 피부질환에 시달렸다. 페트병과 스티로폼을 녹일 정도의 최루액은 주성분인 CS와 용매인 디클로로메탄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 물질은 2급 발암물질이며 다양한 독성이 있다. 경찰은 당시 대테러장비로 분류된 테이저건과 다목적 발사기도 진압작전에 사용했다. 테이저건을 맞는 사람 중에는 뺨에 테이저탄이 박혔고, 8월 4~5일 이틀 동안 경찰특공대가 공장 옥상에 진입해 다목적 발사기로 스펀지탄 35발을 노동자에게 발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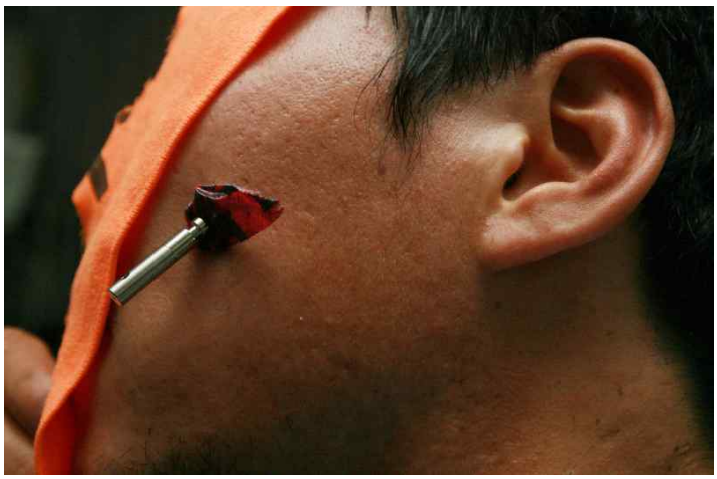

△ 경찰이 쏜 테이저건에 얼굴을 맞은 쌍용자동차 조합원

15) 2022년 11월 30일, 대법원은 “헬기를 이용해 최루액을 공중 살포하거나 헬기 하강풍을 이용해 옥외에 있는 사람에게 직접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점거 파업을 진압한 것은 적법한 직무 집행을 벗어났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16) 6월 25일부터 8월 5일까지 파업 중인 노조원에게 유독성 최루액 원액 2천ℓ가 섞인 물 20만ℓ를 살포했다.

△쌍용차노동자들이 점거 중인 공장으로 공중에서 최루액을 살포하고 있는 경찰헬기

■ 2010년 G20 정상회의

2010년 경찰청은 G20 정상회의 동안 불법 폭력집회를 막겠다며 원거리형 지향성 음향장비(일명 '음향대포')와 다목적발사기를 도입하려 했다. 당시 도입하려는 원거리형 지향성 음향장비(LRAD, Long Range Acoustic Device)[17]는 고출력의 음향파워를 집속시켜 방사하는 것으로 약 1.5km~2km까지 경고 방송이 가능하다. 때에 따라서는 공격용 음파무기로 사용 가능한데 미군은 이라크 전쟁 때 군중 통제용으로 지향성 음향장비를 사용했던 적이 있다. 음향대포의 유효사거리는 대략 1km지만 300m 이내로 접근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154데시벨 고주파를 내보내는데 이는 비행기 이착륙 소리보다 크고, 상대방의 청력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킬 수 있으며, 균형감각을 잃게 만들 수도 있는 충격소음을 낸다.

인권단체, G20대응 민중행동, 인의협 등이 장비의 도입을 철회시키기 위한 활동을 벌였다. 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높은 소음에 노출되어 급성 음향 외상(난청, 이명, 고막파열)과 자율신경계 자극, 정신과적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과 서울과 같은 도심의 경우 고층 건물에 의한 반사 및 잔향으로 주방사 방향에 대해서도 원거리에서 음압레벨이 더 높아질 수 있고 건물 내의 시민들도 소음에 노출될 수 있는 문제를 제기했다. 무엇보다 새로운 위해성이 높은

17) 미국의 아메리칸 테크놀로지(ATC)가 2003년 개발한 엘라드(LRAD 100X, LRAD 1000X)와 한국의 SL Audio Lab의 SW 30P, SW 38M

장비를 도입하는데 안전성을 위한 규격이나 표준이 없다는 문제가 근본적임을 지적했다. 결국 장비는 도입되지 못했고, 이와 관련해 경찰 장비 관련 법적 근거와 규정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 2014년 세월호집회,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가 목적하는 장소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되었던 컨테이너는 경찰버스나 차벽차량으로 대체되어 집회를 봉쇄하거나 행진을 막는 경찰의 주요 전략이었다. 그리고 이 차벽 뒤에 살수차로 물대포를 쏘아 차벽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고 집회 참가자를 해산시키기 위해 사용되었다. 때로는 최루액이나 색소를 혼합한 물대포도 사용했다. 최루액은 분사기를 이용해 쏘기도 했는데 분사기는 보통 스프레이형과 배낭형으로 1~2m까지 근접했을 때 사람의 얼굴, 특히 눈을 조준해서 분사했다.

2015년 세월호 1주기를 전후하여 세월호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자 거리로 나온 시민들을 향해 경찰은 차벽 트럭 18대를 비롯해 차량 470여 대와 안전펜스 등을 동원해 경복궁과 광화문광장, 세종로 네거리 등에 겹겹이 저지선을 쳤다. 서울광장에서의 추모제를 마치고 시민들이 경찰 폴리스라인을 허물고, 청와대 진출을 시도하자 경찰은 물대포와 최루액을 쏘며 세월호 유가족을 포함해 시민 100여 명이 연행했다. 이때 취재하던 기자가 물대포에 맞아 안구 홍채 근육이 파열되는 심각한 부상이 발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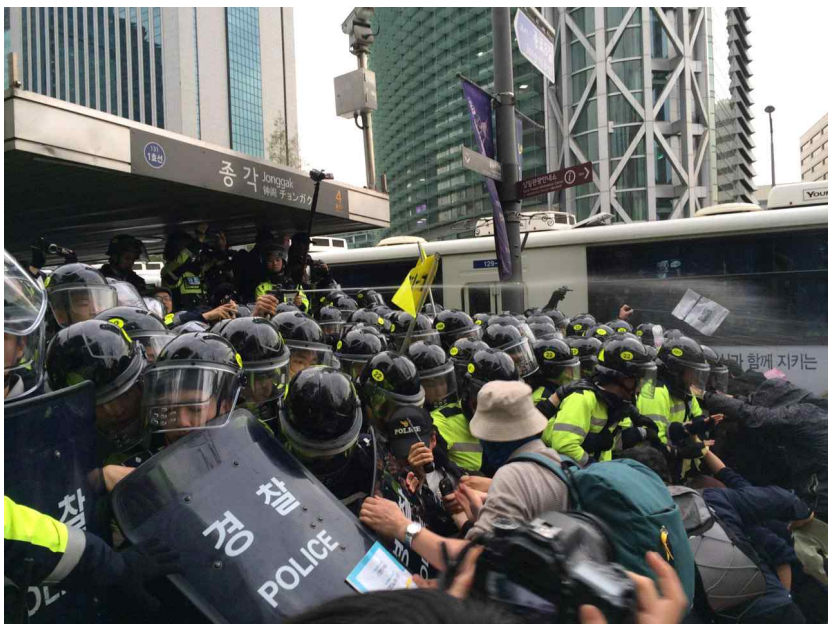

△ 2015년 4월 18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폐기를 요구하는 집회에서 종각역 출구 봉쇄에 항의하자 분사기로 최루액을 분사하고 있다.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를 앞두고 서울·경기·인천지방경찰청에 최상위 비상령인 '갑호비상'을 내리고, 집회와 행진신고에 대해 금지통고를 했다. 경찰은 보유하고 있는 살수차 19대 전부와 경찰버스 679대, 캡사이신 분사기 580대, 채증장비 총 102대를 동원했다. 경찰은 '차벽 설치와 물포 살수' 라는 방식을 통해 매우 선제적이고 공격적으로 대응했다. 광화문광장

주변과 종로에 2~3중의 차벽을 사전적으로 설치하고 차벽에 가로막힌 참가자들을 향해 살수했다. 6시간 동안 쉴 새 없이 살수가 진행되었는데 5년 동안 물포 사용 최대량이었다. 살수는 대부분 직사살수, 조준살수였으며 장시간 최루액을 맞아 눈을 뜨기 어렵고 호흡하기 힘들었다. 살수로 인한 부상자가 다수 발생했으며 백남기 농민은 직사살수를 맞고 쓰러져 결국 사망했다.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 대부분 직사살수가 이뤄졌다.

■ 생명을 잃고 난 뒤에야 퇴출된 물대포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한 물대포는 높은 수압으로 발사하기 때문에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 그렇기에 직사살수는 금지한다. 2008년 촛불집회에서 고막에 구멍이 나고 시력이 손상된 피해가 발생해 문제가 되었지만, 오히려 있던 거리제한 규정마저 없애버렸다.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집회에서도 고막 파열과 뇌진탕의 부상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18]는 '직사살수는 기본권 침해'라는 결정을 했지만, 그 이후에도 경찰은 직사살수를 했다. 사용기준을 강화해 법령의 규정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도 따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최루액 섞은 살수에 대해서, 2020년 직사살수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했다. 그리고 2019년 살수차 19대가 전량 폐차되었고, 2020년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살수차의 사용기준을 소요사태로 인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는 경우로 개정했다. 살수차는 2015년 11월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이후 운용을 중단했고,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전량 폐차[19]했다.

CS 성분의 최루액이 문제가 되자 경찰은 파바(PAVA) 최루액으로 교체했는데, 이는 합성캡사이신으로 물질안전자료(MSDS)에 따르면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다. 특히 물대포에 혼합해 사용할 경우 훨씬 더 고용량으로 노출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최루액을 맞아 시야가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진압과 연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더 큰 위험이 생길 수 있다. 파바를 사용하는

18)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를 분명히 하면서도 "근거리에서의 물포 직사 살수라는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했다.
19) 살수차 생산은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 대지정공 등 국내 특장차 제조사들이 생산하고 있는 살수차는 주로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북아일랜드의 경우, 군중에 대한 살포, 군중 해산 전술에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로 최루액이 집회현장에 사용되지 않았으나, 2023년 5월 캡사이신은 6년 만에 재등장했다. 2023년 5월 16일 건설노조의 1박 2일 노숙 집회를 불법시위로 규정하면서 대통령과 여당은 경찰의 대응 수위를 높이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찰의 '불법집회 해산 및 검거 훈련'이 6년 만에 공식 재개됐고, 살수차 재도입을 검토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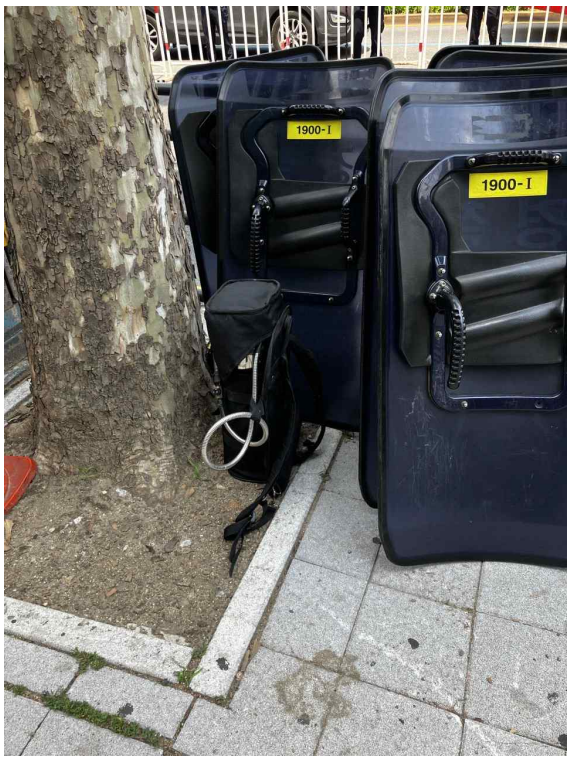

△2023.5.31. 노동·민생·민주·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퇴진! 민주노총 총력투쟁대회에 등장한 최루액 분사기. 실제 사용하지는 않았다.

2. 경찰 장비의 종류와 법적 근거

경찰이 집회·시위에서 폭력행위가 발생하고 이를 통제할 수 없을 때 장비와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집회를 금지하고는 불법시위로 규정했을 때, 폴리스라인을 넘거나 도로를 점거하거나, 경찰이 집회를 방해하는 것에 항의하거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한다.

인권·시민운동은 경찰장비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규정이 없는 것이 현장에서 전적으로 경찰이 판단해서 장비를 사용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지적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경찰장비의 사용 등)에서 '경찰관은 직무 수행 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일반 규정과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의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의 사용'과 함께 최소한의 사용 시 안전 수칙 정도만 있고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은 규정되어 있지 않았

다.

2008년 촛불집회, 2009년 용산참사, 쌍용차 파업진압, 2010년 지향성음향장비 도입의 과정에서 인권단체들은 집회·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장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속해 왔다. 집회·시위 진압을 위해 신체에 위험한 장비 또는 치명적인 방식으로 장비를 사용하고,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는 등 인명과 신체,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이 없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문제 제기의 주요 내용은 위해성 경찰장비의 분류 기준에 대해 경직법에 어떤 규정도 없어 실제 구체적인 위해성의 기준과 무관하게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분류되었다는 점, 경직법에서 기타장비를 규율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경찰장비규정의 개정만으로 새로운 장비를 마음대로 도입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이런 문제 제기로 2014년 경직법이 개정되고,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은 폐지되고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경찰장비의 사용 등) ①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이하 이 조에서 "위해성 경찰장비"라 한다)를 사용할 때에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서 "경찰장비"란 무기, 경찰장구(警察裝具), 경찰착용기록장치, 최루제(催淚劑)와 그 발사장치, 살수차, 감식기구(鑑識機具), 해안 감시기구, 통신기기, 차량·선박·항공기 등 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 <개정 2024. 1. 30.>
③ 경찰관은 경찰장비를 함부로 개조하거나 경찰장비에 임의의 장비를 부착하여 일반적인 사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④ 위해성 경찰장비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⑤ 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안전성 검사의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 검사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⑥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 및 그 사용기준, 안전교육·안전검사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5. 20.]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 「경찰관 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이하 "위해성 경찰장비"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19.>
1. 경찰장구 : 수갑·포승(捕繩)·호송용포승·경찰봉·호신용경봉·전자충격기·방패 및 전자방

패
2. 무기 : 권총·소총·기관총(기관단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산탄총·유탄발사기·박격포·3인치포·함포·크레모아·수류탄·폭약류 및 도검
3. 분사기·최루탄등 : 근접분사기·가스분사기·가스발사총(고무탄 발사겸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최루탄(그 발사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기타장비 : 가스차·살수차·특수진압차·물포·석궁·다목적발사기 및 도주차량차단장비

[경찰장비관리규칙][20]

제68조(장비의 구분) 이 규칙에서 정하는 장비는 성질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경찰장구류 (수갑, 포승, 벨트형 포승, 호송용 포승, 경찰봉, 호신용경봉, 전자충격기, 방패, 전자방패)
2. 안전·보호장비
3. 기동장비 (차량, 항공기, 선박, 자전거/ 특수진압차, 가스차, 살수차 포함)
4. 무기류 (권총·소총·도검, 유탄발사기·중기관총·박격포·저격총·산탄총·로프발사총·다목적발사기(고폭탄을 사용하는 경우)·물발사분쇄기·석궁 등)
5. 최루제 및 그 발사장치 (분사기·가스발사총·최루탄발사기(장전탄통 포함)·기타 최루탄류)
6. 작전장비
7. 검색·관찰장비
8. 경찰착용기록장치
9. 감정·감식장비
10. 정보통신장비
11. 기타장비

1) '위해'의 모호성과 자의적 해석 가능성

위해성 경찰장비 규정이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과거 경찰장비규정과 동일하게 장비를 분류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위험이 아닌 자의적 분류라는 비판은 여전하다. 전자충격기나 전자방패가 수갑, 포승과 같이 분류될 수 있는 장비라고 할 수 없으며, 기타장비의 경우 그 위해성이 심각한데도 경직법에 규율되지 않았다. 기타장비 중 석궁과 다목적발사기는 경찰청훈령인 경찰장비규칙에는 무기류로 분류되어 있다. '위해성'의 기준이 불분명할 경우,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신체적 고통을 일으키는 장비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2) 저살상 무기의 위험성 간과

무기로 분류되지 않은 장비는 저살상 무기 혹은 비치명적 장비로 분류되는데 다목적 발사기나

20) 경찰장비규칙 제157조에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관리 및 사용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장비로 특별관리장비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여기서의 구분은 유해성장비규정과 동일하다.

고무탄, 압축 스펀지탄 등이 있다. '저살상'이 총과 같은 무기와 비교해 위력은 낮을 수 있지만 사용 방식과 상황에 따라 사망과 중상에 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살상'과는 분명히 다르다. 이런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규정에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안전해 보이는' 착각으로 사용을 확장, 확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최근 경찰은 저위험 권총을 2026년 시범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경찰은 이들 경찰서에서 1년간 저위험 권총을 시범 운영한 뒤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지급 대상을 전 경찰서로 확대해 지역 경찰에 대해 '1인 1권총'이 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저위험 권총은 '스마트 권총'으로도 불리는데 이런 명명이 위험에 대한 긴장을 낮추는 효과도 있다.

3)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침해 가능성

집회의 권리는 합/불법의 여부와 상관없이 평화적인 집회라면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불법집회라는 이유로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 규정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비를 사용하도록 명시한 것은 실제 현장에서 경찰관의 주관적 판단에 지나치게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 공권력의 사용은 언제나 비례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즉, 달성하려는 목적과 사용되는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이 있어야 하는데, 특히 물리력의 사용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다른 모든 수단을 소진한 후에야 가능하다. 규정의 모호함은 경찰이 필요 이상으로 강력한 장비를 사용하거나, 시위 해산과 같은 특정 목적을 위해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3(분사기 등의 사용)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가 판단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분사기(「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사기를 말하며, 그에 사용하는 최루 등의 작용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1. 범인의 체포 또는 범인의 도주 방지
2. 불법집회·시위로 인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 억제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불법집회등에서의 경찰봉·호신용경봉의 사용기준) 경찰관은 불법집회·시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공공시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경찰봉 또는 호신용경봉을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가스차·특수진압차·물포의 사용기준) ①경찰관은 불법집회·시위 또는 소요사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공공시설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에서 가스차를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의2(살수차의 사용기준)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살수차 외의 경찰장비로는 그 위험을 제거·완화시키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의 명령에 따라 살수차를 배치·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1. 소요사태로 인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는 경우
2. 「통합방위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행위로 인해 해당 시설이 파괴되거나 기능이 정지되는 등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살수차를 사용하는 경우 별표 3의 살수거리별 수압기준에 따라 살수해야 한다. 이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살수해야 한다.

③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살수하는 것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을 제거·완화시키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의 명령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최루액을 혼합하여 살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최루액의 혼합 살수 절차 및 방법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 12. 31.>
[본조신설 2020. 1. 7.]

4) 책임성 확보의 미흡함

장비 사용 규정 위반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위반 경찰에 대한 징계 또는 처벌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는지 분명하지 않다. 장비 사용 기록과 채증 의무가 있지만, 이것만으로 모든 상황이 명확하게 입증되기 어렵다. 책임을 묻기 위한 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인권 보호의 기본이다. 규정 위반에 대한 강력하고 투명한 책임 메커니즘이 부족하다면, 경찰이 장비 사용 규정을 경시하거나 인권 침해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오히려 경찰의 면책조항을 확대하고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2조(벌칙)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최근 경찰 장비와 집회 대응의 경향 : 감시와 처벌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물리력을 동원한 경찰의 집회 대응 방식에 대한 비판이 이어진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경찰개혁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경찰개혁위원회의 집회 대응 패러다임 변화 권고 이후 실제 물리력 사용이 줄었다. 2018년 '원칙적으로 집회·시위 현장에서 차벽

을 쓰지 않는다'라고 운용지침을 바꾸고, 살수차 운용지침을 바꾸어 집회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 그리고 물리력을 대신한 것은 엄정한 법집행이다. 소음으로 집회 현장을 통제하고 CCTV와 채증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로 불법 행위자를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2023년 윤석열의 '불법집회에 강경 대응하라'는 지시 이후 집회 금지가 늘고 현장 통제가 강화되었다. 경찰은 용산 경비를 위해 차량형 안전펜스(차벽트럭) 20대를 매년 4대씩 5년간 전부 새것으로 교체하고, 트레일러형 안전펜스도 5년간 114대 구매하기로 했다[21].

△차벽 트럭은 5톤 트럭 옆면에 너비 8.6m, 높이 4.1m의 대형 펜스를 붙이는 방식의 차단 장비다[22].

21) 차세대 차벽인 이동형 안전펜스(트레일러형 안전 펜스)는 2023년 23대에서 2024년 39대로 늘었다. 경찰청은 2025년에 16대를 더 구매하겠다고 밝혔다.
22) 경찰 '차벽 트럭' 10년 만에 구매 추진…"용산 경비용", 한겨레신문, 2023.06.23.,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7168.html

△트레일러형 안전펜스는 이동시에는 접힌 채 SUV 차량에 견인되지만 집회 현장 등에선 실린더를 통해 자동으로 펼쳐져 폭 12m, 높이 2.8m 장벽을 구축한다.

한편, 정부와 경찰은 치안 환경과 기술 변화에 따라 새로운 경찰 장비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와 검토를 지속하고 있다. 경찰청은 '스마트/과학 치안' 구현을 목표로 다양한 AI 및 첨단 기술 기반 장비와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검토 및 연구 개발 중이다. 이는 집회 시위 대응뿐만 아니라 범죄 예방, 수사, 교통 관리, 생활안전, 경비 등 경찰 업무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현재 개발되어 사용 중이거나 시범운영 중인 장비들은 주로 인공지능 CCTV, 경량화되고 신체를 보호하는 장구, 웨어러블 캠 등이다. 세종시**는** 방범용 CCTV, 차량용 블랙박스, 드론 영상을 분석하여 야외 환경에서 사람/차량을 식별, 추적하는 AI CCTV 서비스 운영하고 있고, 서초구는 국내 최초 범죄예측기반 CCTV 선별관제시스템 통합 시험적용, 동두천시는 지명수배자 사진을 서버에 저장해뒀다가 안면 인식이 가능한 지능형 CCTV를 시내 곳곳에 설치해 검거에 활용 중이다. 2025년 5월 서울경찰청은 기동순찰대'K-스마트 순찰'을 시범 운영했다[23]. 웨어러블 로봇과 전기자전거를 활용한 지상 순찰, 열화상 감지 및 인공지능(AI) 객체 인식 기능을 갖춘 드론을 이용한 공중 순찰, 순찰정을 이용한 한강 수상 순찰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23) 여의도에 '로보캅' 등장…서울경찰, 첨단장비 활용 스마트 순찰, 동아일보, 2025.5.11,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0511/131578831/1

△서울경찰청 기동대원들이 웨어러블 로봇을 착용하고 순찰을 돌고 있다.

저위험 권총(일명 '스마트 권총')도 개발되었다. 2020년 개발된 저위험 권총[24]은 경찰이 기존에 사용하던 38구경 권총 대비 약 25~30% 더 가볍게 만들어졌다. 저위험탄은 플라스틱 재질의 탄환으로 격발 시 위력은 실탄의 10% 수준이라고 한다. 성인 남성 기준 허벅지의 6cm 이내에 박히는 수준으로 대동맥과 뼈에 손상을 가할 수 있게 설계됐다. 손잡이 쪽에 자동차 블랙박스 역할을 하는 '스마트 모듈' 장치에 GPS 기능이 탑재돼 있어 사격 시간·장소·각도·발수(發數) 등 여러 정보가 저장된다. 2023년 윤석열이 “모든 현장 경찰에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겠다”고 밝혀 경찰청은 2024년 중 지구대·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을 단계적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공포탄, 비살상탄, 보통탄(실탄)을 모두 사용 가능하며 사수가 사용 탄종을 확인하며 사격할

24) SNT모티브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민군협력사업’으로 개발했다. 국내 도입 이전에 중동 국가로 수출했다.

수 있다.

집회 및 시위 관련 경찰 장비에 AI를 도입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웨어러블 캠, 스마트글라스, 드론 등 실시간 현장 상황을 기록하고 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장비들은 이미 사용할 준비가 되어있다. AI 기반 영상 분석 시스템은 CCTV나 드론을 통해 실시간으로 군중의 규모, 밀집도, 이동 경로, 잠재적 위험 구역 등을 분석할 수 있다. 경찰은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위대의 규모를 파악하고 경력 배치나 통제 전략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수 있으며, 안면인식 기술로 특정 인물을 확인, 추적할 수 있다. 또한 과거 시위 진압 사례, 법규, 인권 관련 지침 등 방대한 데이터를 AI가 학습하여, 현장 지휘관에게 특정 상황에서 어떤 장비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법적인 리스크가 적은지 등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장에서 물리적 충돌을 줄이면서도 집회를 통제하기 좋은 방법은 감시, 추적하여 처벌하는 것이다. 고도화된 카메라와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인공지능이 결합된 방식은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얼굴 이미지는 공공장소의 CCTV로부터, 공개된 소셜미디어로부터 대상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수집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공개된 개인정보와 연결이 쉽다. 개인과 신념의 연결, 개인과 가족의 연결, 개인과 종교적 연결, 개인과 질병의 연결, 개인과 일의 연결로 이어져 행동 이력으로 변화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권위적인 정부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을 때 안면인식 기술은 사후적인 처벌로 이어지기 쉬워 위축효과를 만든다. 한국은 이미 경찰의 집회 대응이 물리적 충돌보다는 물리적 차단과 사후적인 추적과 처벌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AI 기술을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UN 인권 최고 위원회는 평화적 집회의 군중을 식별하기 위하여 안면인식 기술 사용을 금지하고, 구체적으로 범죄행위에 가담하거나 가담할 것이라는 징후가 없고 그러한 녹음 녹화가 법률에 의해 필요한 보호조치가 없는 한 안면인식 기술의 사용 자제를 권고했다.[25)]

유럽인권법원에서 언급한 관련 국제 자료 중 UN 인권 최고 위원회(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의 “평화적 시위를 포함한 집회에서 인권의 증진과 보호에 대한 새로운 기술의 영향(Impact of new technologies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the context of assemblies, including peaceful protests)” 문서 내용

○ 실질적인 안전조치가 없는 경우, 집회 중 치안당국이 안면인식 기술의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표현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권리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 사람의 이미지는 타인과 구별하는 고유의 특성을 가지므로 동의 없이 안면 이미지를 녹화, 분석 및 보관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침해이며, 안면인식 기술이 집회에서 사용되면 이러한 침해가 무차별적으로 발생한다.

○ 집회는 전통적으로 집회참가자가 식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수준의 보호를 허용

25) 주민호·정태욱, 인공지능을 이용한 범죄예방에 관한 헌법적 연구 - 안면인식기술(FRT)에 대한 규범적 통제를 중심으로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85집, 2024.04

해 왔다. 안면인식 기술의 배포는 실시간 식별은 물론 표적 감시 및 추적이 가능해져, 공공장소에서 시위하거나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는 자유를 위축시킨다.

○ 시청각 녹음 및 안면인식 기술의 사용은 적법성, 필요성, 비례성의 원칙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사용해야 하며, 평화로운 시위에서는 그 사용을 삼가야 하며, 예외적으로 폭력, 총기 등의 사용이 임박하고 심각한 범죄행위가 의심되는 때에 안면인식 기술 사용이 허가되며 이때에도 비례성의 입증이 필요하며, 기존 녹화 및 녹음물은 심각한 범죄 용의자의 집회 참여를 식별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 평화로운 집회에서 안면인식 기술 사용은 권장되지 않지만, 이를 사용할 경우에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개인정보를 보호할 규제를 마련하고, 범죄 수사 및 폭력 범죄 기소에 필요한 특정 부분을 제외한 모든 데이터는 즉시 삭제되어야 한다. 관련 당사자는 범죄 수사 혹은 기소를 방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합법적인 목적과 법적 근거 없이 저장된 개인정보에 접근, 정정, 삭제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또한, 평화로운 집회에서 안면인식 기술의 사용은 효율적인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규율을 담고 있는 규제 사항에 놓여야 한다. 독립적이고 공정한 데이터 보호 기관과 안면인식 기술 조치를 승인할 사법 성격의 기관의 참여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모든 상황에서 녹음, 녹화, 안면인식 기술 사용에 대해 투명해야 하며, 그 사용 시기를 항상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경찰 무력 사용의 국제 기준과 시민의 권리

최석군 변호사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I. 들어가며

막스 베버는 1919년「정치란 무엇인가(Was ist Politik?)」란 강연에서 국가는 일정한 영토 내에서 합법적인 물리적 강제력(Legitimate physical force)의 독점을 주장하는 유일한 인간 공동체이다."(„Staat ist dasjenige menschliche Gemeinwesen, welches innerhalb eines bestimmten Gebietes das Monopol legitimer physischer Gewaltsamkeit für sich (mit Erfolg) beansprucht.“)라고 말하였다 합니다.

오늘날 폭력을 독점하는 국가의 지위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가 되고 있으며, 그 무력은 결국 시민들의 인권, 헌법적 기본권의 보장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가 경찰권, 군사력, 체포, 처벌 등의 공권력을 행사하는데 있어 그 절차적 요건과 효과에 대해 촘촘한 규제가 이뤄지고 지는 방향으로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법질서와 그 운용에 있어 과거에 비하여 인권친화적인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나 아직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시민의 권리는 꼭 국내법의 한계에만 갖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규범적 효력을 가집니다. 그에 대해 국내법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 다른 절차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란은 있으나 통상적으로 국회의 비준을 거쳐 가입한 조약의 효력에 대해 국내법적 효력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합의한 인권조약들을 살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찰의 무력 사용에 대한 어떠한 원칙이 제시되고 있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II. 국제기준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앞서 보았듯 헌법 제6조 제1항은 국제법규의 국내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규범적 효력을 가집니다. 그에 대해 국내법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 다른 절차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란은 있으나 통상적으로 국회의 비준을 거쳐 가입한 조약의 효력에 대해 국내법적 효력이 인정되고 있습니

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우리나라는 헌법상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가입하였고, 위 규약은 1990. 7. 10. 그 효력이 발생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26]라고 하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약의 서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에 선언된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을 고려하고, 이러한 권리가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으로부터 유래함을 인정하며,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시민적, 정치적 자유 및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하는 자유인간의 이상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뿐만 아니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경우에만 성취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인권과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증진시킬 「국제연합헌장」상 국가의 의무를 고려하며, 타인, 그리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증진과 준수를 위하여 노력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여[27]야 한다.

이렇게 국제인권규약은 입법자의 해석뿐 아니라 행정과 사법의 기준으로도 적극적 기능하며, 때로는 국내법의 공백을 메우거나 그 한계를 넘어서는 규범적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특히 시민의 권리에 관한 문제에서 국제기준은 국내 권리 보장의 수준을 점검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국제규범은 단순한 다른 나라의 기준이 아니라, 국내 질서 속에서 시민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실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권 규약과 사회권 규약과 같은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하였습니다.

이하에서 경찰의 무력 사용에 대한 국제 기준으로 볼 수 있을만한 대표적인 것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2. 자유권 규약 중 무력 사용과 관련한 시민의 권리

“자유권 규약(ICCPR)”은 국회가 비준한 조약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자유권 규약은 그렇지만 경찰의 무력 사용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주지는 않습니다. 시민의 생명, 신체, 집회의 자유 등을 규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제6조(생명권)**
> 1. 사람은 누구나 생명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해 보호받는다. 아무

26)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0헌마509, 2001헌마305(병합) 전원재판부 [입법부작위위헌확인]
27)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의 서문

도 그 생명을 함부로 빼앗기지 않는다.

제9조(신체의 자유)
1. 사람은 누구나 신체의 자유 및 안전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아무도 함부로 체포 또는 구금당하지 않는다. 법률에 의한 정해진 이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아무도 그 자유를 빼앗기지 않는다.
2. 체포당하는 사람은 체포당할 때 그가 체포당하는 이유에 대해 통고받고, 또 자기의 혐의 사실에 대해 신속하게 통고받는다.
3. 형법상의 혐의로 체포 또는 구금당한 사람은 판사 또는 법률에 의해 사법권의 행사가 허용된 다른 관리 앞에 신속하게 인도되고, 또 타당한 기간 안에 재판에 회부되거나 석방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재판에 회부된 사람이 구치소에 구금당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석방에 즈음해서 재판 또는 사법적 절차상 그 밖의 단계에서의 출두 및 필요한 경우 판결의 집행을 위한 출두가 보증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4. 체포 또는 구금으로 자유를 빼앗긴 사람은 법원을 대상으로 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 절차가 목적하는 바는, 법원이 그 구금의 합법성에 관해 지체없이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또 그 구금이 합법적이 아닐 경우 석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5. 불법으로 체포 또는 구금당한 사람을 마땅히 배상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1조(집회의 자유)
평화적 집회의 권리는 인정된다. 법률에 따라 가해지는 제한으로서, 국가의 안전 공공의 안녕.공공지서 또는 공중건강과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해 민주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이 권리의 행사에 가해지지 않는다.

자유권 규약은 시민의 권리로 법률에 의해 생명, 신체, 집회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할 것으로 말하며, 그 제한도 법률에 의하여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자유권위원회 일반 논평

가. 일반논평의 의의

경찰의 무력 사용의 국제기준으로 대표적인 것은 자유권 위원회 일반논평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자유권규약에 가입하였고, 이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데, 유엔 자유권 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는 자유권 규약을 감독하는 조약기구입니다.

이 위원회는 각 조항에 대한 해석지침과 적용 기준을 설명하기 위해 "일반논평(General Comment)"이라는 형식의 문서를 채택합니다. 일반논평은 국가 보고서 심의, 개별청원, 조사절차 등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규약의 조항을 구체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일반논평 제34호: 표현의 자유(제19조) 해석, 일반논평 제37호: 집회의 자유(제21조) 해석, 일반논평 제20호: 고

문금지 및 비인도적 대우 금지(제7조) 해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반논평은 조약 자체와 같은 강제력을 가진 “조약규범”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유권 규약의 이행을 감독하는 공식 기구인 자유권 위원회가 만든 해석이기 때문에, “권위 있는 해석(authoritative interpretation)”으로 국제사회에서 널리 인용되고 존중됩니다. 특히 국제인권법, 국제사법재판소(ICJ), 지역 인권재판소(유럽인권재판소, 미주인권재판소 등), 국내 헌법재판소 및 법원에서도 해석 자료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보고 절차를 통해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와 일반논평을 정기적으로 전달받고 있습니다. 일반논평은 자유권규약의 해석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실제 헌법재판소 집회의 자유, 고문금지, 표현의 자유 등에서 일반논평을 인용하거나 국제인권 기준에 비추어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도 하고, 인권 변호사나 공익단체들이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관련 위헌소송, 경찰력 남용 사건 등에서 일반논평을 근거로 활용하며,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권고안, 조사보고서, 정책제언 등에서 일반논평을 인용하여 국내 제도나 법률의 개정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 시민의 권리에 대한 일반논평

1) 생명권

일반논평 제36호 제2항에서 생명권은 “모든 인권의 전제 조건”이며, 국가는 시민의 생명을 자의적으로 박탈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뿐만 아니라, 생명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의무도 진다고 보며, 치명적 물리력의 사용은 “절박하고 실제적인 위협”에 직면했을 때만 정당화될 수 있으며, 공권력의 과잉 물리력은 사망 위험을 증가시켜 생명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제1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국가는 모든 사망 사건에 대해 독립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유족의 진실 접근권과 구제권을 보장해야 한다(제13·20항)고 합니다.

2) 신체의 자유

일반논평 제35 제3항에서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는 모든 개인이 자의적인 체포, 구금, 강제력을 포함한 비례성 없는 신체적 제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경찰 등 공권력 행사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고 예측 가능해야 하며,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인 물리력 사용은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고 위법한 신체구속으로 간주됩니다(제12, 19항). 또한 국가는 체포된 자에게 접견권, 신속한 사법심사권, 구금 사유 통지권 등 실질적인 절차적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합니다(제58항).

3) 집회의 자유

일반논평 제37조 제1항, 제4항에서 집회의 자유는 시민이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기 위해 공동으로 모일 수 있는 권리로서, 민주주의 사회의 필수 요소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국가는 집회 개최를 단지 허용하는 것을 넘어서, 집회의 안전과 실질적 실현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책무를 가지며, 그에 따라 치안 유지나 질서 유지를 이유로 과도한 제한이나 사전 금지를 해서는 안 됩니다(제22·44항). 경찰 물리력의 행사는 최소한의 필요성과 비례성 원칙에 부합해야 하며, 무력에 의한 해산이나 강제조치는 오직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제78·83항). 또한 평화적 집회의 참가자에게 체포, 처벌, 보복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국제인권법상 명백한 권리 침해로 규정됩니다(제89항).

이상과 같이 유엔 자유권 위원회는 생명권, 신체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서로 연결된 핵심 시민권으로 보고, 이 권리들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자의적 개입을 자제하고, 공권력 행사에 있어 법에 근거한 투명하고 책임 있는 절차를 갖춰야 한다고 분명히 천명하고 있다.

나. 무력 사용의 기준에 대한 일반논평

1)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제35호(2014년)

일반논평 제35호(2014년)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9조에 따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해설하고 있습니다. 이 논평에서 직접적으로 경찰의 물리력 사용에 대한 부분을 명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법집행기관이 시민의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신체의 자유나 안전에 대한 박탈이나 제한, 혹은 물리력 행사는 반드시 합법적인 근거에 따라야 하며, 자의적이거나 비합법적이어선 안 되며, 행정적 구금이나 물리력 사용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는 점, 무력 및 강제수단의 사용은 즉각적이고 직접적이며 긴급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정되며, 그 정도와 기간도 필요 최소한이어야 한다는 점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반논평 제35호는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침해하는 물리력 행사에 대해 반드시 합법성, 필수성, 비례성, 최후의 수단, 사법적 심사, 피해자 보호 등을 갖춰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경찰 등 법집행기관의 모든 강제력 행사에 폭넓게 적용됩니다.

2)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제37호(2020년)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제37호는 유엔자유권위원회가 2020년에 발표한 국제인권규약 제21조(평화적 집회의 권리)에 대한 해설입니다. 위 논평에서 평화적 집회의 개념과 보호범위, 국가의 의무, 제한의 요건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반논평 제37호 또한 집회의 제한에 있어 법률에 의하여 필요성, 최소침해, 비례성 등을 지켜야 제한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살펴볼만한 부분은 78항과 83항부터 88항까지입니다.

> 78. 법집행공무원은 폭력 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들은 어떤 것도 효과가 없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비폭력 수단을 총동원해야 하고, 만약 물리력 사용이 절대적으로 불가피하다면 사전에 경고를 발할 의무가 있다. **모든 물리력 사용은 규약 제6조와 제7조에 해당하는 적법성, 필요성, 비례성, 예방조치**

성, 비차별성의 기본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물리력을 사용한 자는 각각의 물리력 사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법집행공무원에 의한 물리력 사용에 대한 국내법 제도는 국제법상 요건에 부합해야 하며, "법집행공무원의 물리력 및 화기 사용에 관한 기본원칙(Basic Principles on the Use of Force and Firearms by Law Enforcement Officials)"과 "법 집행에서 덜 치명적인 무기에 관한 유엔인권지침(United Nations Humans Rights Guidance on Less-Lethal Weapons in Law Enforcement)"과 같은 기준을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

85. 예외적인 경우에만 집회가 해산될 수 있다. 집회가 더는 평화적이지 않거나, 또는 표적 체포 등 비례원칙에 따른 조치로는 합리적인 해결이 불가능한 심각한 폭력의 발생이 임박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해산의 방법을 취할 수 있다. 모든 상황에서, 물리력 사용에 관한 법집행규칙이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 **집회 해산 명령의 조건은 국내법상 규정**이 있어야 하며,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만이 평화적 집회의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집회가 평화적이지만 도로 봉쇄 시간의 연장 등 높은 수준의 혼란을 발생시키면, 일반적으로 그러한 **차질이 "심각하고 지속"되는 경우에만** 집회가 해산될 수 있다.

86. 해산 결정은 국내법 및 국제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물리력 사용은 피해야 한다.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최소한의 필요한 물리력만 사용할 수 있다.** 가능한 한, 사용되는 물리력은 폭력에 개입하거나 폭력 위협을 가하는 특정 개인 또는 집단을 겨냥해야 한다. 경미한 부상을 넘어서는 상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물리력을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개인 또는 집단을 대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87. **최루탄과 물대포 등 광범위한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덜 치명적인 무기**는 무차별적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 그러한 무기가 사용될 때는 군중이 몰리는 상황 또는 행인에 대한 위해 등의 위험성을 제한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한 무기의 사용은 먼저 구두 경고를 하고, 집회 참여자들이 해산할 충분한 기회를 준 상태에서,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한정된 공간에서는 최루탄을 사용하면 안 된다.

88. **화기는 집회의 치안을 위한 적절한 도구가 아니다.** 단순히 집회를 해산시키기 위해 이러한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국제법을 준수하기 위해, 집회 환경에서 법집행공무원에 의한 화기 사용은, 사망 또는 심각한 상해가 발생할 것 같은 긴박한 위협에 맞서기 위해 엄격히 필요한 상황에서 대상이 되는 개인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그러한 무기가 생명에 위협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최소한의 한계 기준은 고무를 입힌 금속 탄환의 발사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법집행공무원이 물리력을 사용할 태세를 갖추거나, 또는 폭력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당국은 적절한 의료시설의 이용을 보장해야 한다. 집회에서 치안 유지를 할 때 무차별적인 발포와 완전 자동화 모드의 화기 사용은 결코 합법일 수 없다.

4. 기타 국제기준

가. 법집행 공무원 행동강령 (1979) (Code of Conduct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

1979년 12월 17일 유엔 총회 결의(Resolution 34/169)로 채택된 국제 기준으로 법집행 공무원의 구체적 행동 기준을 제시해, 인권 존중과 사회봉사의 의무, 불합리한 무력 사용 금지, 고문 및 비인도적 대우 금지 등 보편적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강령은 "법적 구속력 없

는(Non-binding)" 국제적 기준(soft law)에 해당하나, 유엔 회원국 및 국제사회가 따라야 할 윤리적·도덕적 기준으로 인정됩니다.

강령은 3조에서 "법집행 공무원은 엄격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주석에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비례성의 원칙을 지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 법집행 공무원의 강제력 및 무기 사용에 있어서의 기본원칙(Basic Principles on the Use of Force and Firearms by Law Enforcement Officials)

1990년 쿠바 하바나에서 열린 제8차 UN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회의에서 채택된 국제 기준으로 역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유엔 회원국의 법집행 및 경찰 활동에 대한 윤리적·도덕적 국제 기준이자 인권기준으로, 법집행 기관의 정책·실무·훈련에 널리 준용되고 있습니다.

위 원칙에서 법집행 공무원은 가능한 한 비폭력적 수단을 먼저 사용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강제력이나 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무기 사용 시에는 피해와 상해를 최소화하고, 인명을 최우선으로 존중해야 하며, 사용 전에는 신분을 밝히고 경고해야 하며, 부상이나 사망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의적이거나 남용적인 사용은 금지되며, 정부는 그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며 모든 상황에서 이러한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소결

이상 살펴본 국제기준들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기준은 합법성, 필요성, 침해의 최소성, 비례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통상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기본권 제한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사용하는 '과잉금지의 원칙'과 내용상 크게 차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 좀 더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고, 무력 사용시 기록,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의 발생시 조사와 감독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방향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국제기준은 경찰의 무력사용 기준으로 합법성, 필요성, 비례성, 책임성, 예방을 핵심원칙으로 하며, 실제 법집행 현장에서 경찰이 최저한도의 합법적·필요한 수준만큼만 신중하게 무력(및 화기)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것을 권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III. 나가며

시민의 권리와 무력사용에 관한 국제기준을 간단히 살펴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권 규약을 비준한 국가로서 시민의 권리를 국제적으로 보장할 의무가 있으나, 현실에서는 일부 권리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고문 및 비인도

적 처우 금지, 양심의 자유, 이주민의 권리 보장 등이 형식적 보장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집회의 자유(제21조)는 경찰의 사전 제한이나 금지 통고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평화적 시위에 대해 과잉 대응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비례성 원칙을 위반하고, 집회의 실질적 자유를 침해하는 구조적 문제로 지적됩니다.

자유권 규약의 시민적 권리의 핵심 원칙은 겉으로는 제도적으로는 구현되고 있는 듯 하나, 실질적으로 정권의 변화에 따른 공권력의 자의적 적용등으로 인해 여전히 현실적으로 국제기준에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무력의 사용은 특히 시민의 권리를 가장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국가의 행위입니다.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문제제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한국의 경찰무기 수출과 민주주의

쥬 (전쟁없는세상)

1. 한국산 경찰무기 및 장비 수출통제 현황

(1) 한국의 무기 수출통제 법제 개괄

한국의 무기 수출통제 체제를 규정하는 법률에는 대외무역법, 방위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등이 있다.

[대외무역법]

제19조(전략물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제평화 및 안전 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수출통제체제 또는 이에 준하는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에 따라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등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수출허가) 제1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물품등(이하 "전략물자"라 한다)을 수출하려는 자 또는 수출신고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이하 "수출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중략)

제19조의3(상황허가)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재래식무기(이하 "대량파괴무기등"이라 한다)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등을 수출하려는 자 또는 수출신고하려는 자는 수입자나 최종사용자 등이 이를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알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이하 "상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방위사업법]

제57조(수출 허가 등) ①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제3국간의 중개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로서 해외에 파병된 국군에 제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략)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수출입의 허가 등) ① 총포·화약류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때마다 관련 증명서류 등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고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수출 허가를 하기 전에 수입국이 수입 허가 등을 하였는지 여부 및 경유국이 동의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때마다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조업자·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가 아니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직접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은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식별표지가 없는 총포는 수입 또는 수출을 허가할 수 없다.
⑤ 화약류를 수입한 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5조(허가기관) ①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전략물자의 허가기관(이하 "허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별표 2(이중용도품목)의 제1부부터 제9부까지에 해당되는 물품등
2.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 별표 2(이중용도품목)의 제10부(원자력전용품목)에 해당되는 물품등
3. 방위사업청장 : 별표 3(군용물자품목)에 해당되는 물품등과 별표 2(이중용도품목)에 해당되는 물품등(수입국 정부(국방부 등), 군 관련 기관 및 방위산업체에서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한함)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황허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다. 다만,「관세법 시행령」제98조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제28류 중 방사성동위원소의 유기 또는 무기화합물, 제84류 중 원자로 및 이들의 부분품에 대한 상황허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하며, 최종사용자가 수입국 정부(국방부 등), 군 관련 기관 및 방위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군수품에 대한 상황허가는 방위사업청장이 한다.

종합하면, 군용물자품목 및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이중용도품목은 방위사업청의 소관이고,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이중용도품목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소관이며, 군수용이 아닌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은 경찰청의 소관이다.

분류	통제품목	근거법령	담당부처
전략물자	이중용도품목(민수용)	대외무역법	산업통상자원부
	이중용도품목(군수용), 군용물자품목	대외무역법	방위사업청
상황허가 대상품목	상황허가 대상품목	대외무역법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방산물자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방위사업법	방위사업청
총포류	총포·도검·화약류 등(민수용)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경찰청

무기류 수출통제 근거법령 및 담당부처

(2) 한국의 경찰장비 수출통제 현황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르면, 경찰관의 직무수행 중 통상 용법대로 사용하는 경우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관리 및 사용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특별관리대상 장비는 다음과 같다.

- 경찰장구: 수갑, 포승, 벨트형 포승, 호송용 포승, 경찰봉, 호신용경봉, 전자충격기, 진압봉, 방패 및 전자방패
- 무기: 권총, 소총, 기관총, 산탄총, 유탄발사기, 박격포, 3인치포, 클레이모어, 수류탄, 폭약류 및 도검
- 분사기 등: 근접분사기, 가스분사기, 가스발사총, 가스분사겸용경봉, 최루탄발사기 및 최루탄
- 기타장비: 가스차, 살수차, 특수진압차, 석궁, 다목적발사기(스펀지탄·고무탄·페인트탄·조명탄을 사용하는 경우)

위 장비들 가운데 ‘무기’는 대부분 전략물자(군용물자품목)이자 총포·도검·화약류로서 방위사업법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위사업청과 경찰청의 허가 대상이다. 최루탄을 포함한 ‘분사기 등’과 ‘경찰장구’ 중 전자충격기, 기타장비 중 석궁 및 다목적발사기 또한 총포·도검·화약류로서 경찰청의 허가 대상이다. 문제는 수갑, 진압봉 등 전자충격기를 제외한 ‘경찰장구’ 및 ‘기타장비’ 중 살수차와 특수진압차인데, 해당 품목들은 전략물자, 방산물자, 총포·도검·화약류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수출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다음 품목들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로 러시아, 벨라루스에 대한 상황허가 대상품목으로 등재되었다(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2의2). 해당 품목들을 포함한 목록의 출처는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의 통제목록

(Commerce Control List)이다.

- 폭동 통제용 물대포 시스템
- 처형하는 목적으로 설계된 장비
- 족쇄, 수갑 등 법 집행을 위한 구속장치
- 고문 집행을 위해 특수 제작된 장치
- 최루 가스 제제를 포함한 화학 작용제

다시 말해, 물대포 및 수갑 등 구속장치는 대상 국가가 러시아나 벨라루스인 경우를 제외하면, 정부 허가 없이 수출이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위 품목들은 유엔 고문 및 그 밖의 잔인하거나 비인도적,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a) 고문이나 기타 부당한 대우 금지가 허용하는 한계를 넘어서는, '본질적으로 잔인하거나 비인도적, 모욕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품목' 혹은 (b)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사용될 경우 정당한 공공 기능을 수행할 수 있지만 '고문과 학대에 오용될 위험이 높은 무기 및 장비'로 지정한 품목에 해당하므로 인권적 관점에서 엄격한 규제가 요구된다.

(3) 최루탄 수출 규제 현황

최루탄은 총포·도검·화약류·전략물자(군용물자품목)에 해당하여 수출 시 관할 시도경찰청과 방위사업청의 허가를 각각 받아야 한다. 대외무역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는 전략물자가 '평화적 목적에 사용될 것' 및 해당 물품의 수출이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등의 기준에 따라 수출을 불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한국산 최루탄이 해외 민주화 운동 탄압에 사용되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는데도 2017~2021년 최루탄 수출 신청을 불허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방위사업청 또한 2017년 16건 중 3건, 2018년 16건 중 4건, 2019년 25건 중 6건, 2020년 12건 중 1건, 2021년 9건 중 1건에 대해서만 최루탄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경찰은 화약류 제조 또는 판매업 허가 보유 여부 등만 점검할 뿐이라며, 최루탄이 평화적 목적에 사용되는지 여부는 방위사업청 소관이라고 책임을 넘겼다. 한편 한국산 최루탄이 수출 후 평화적 목적에 사용되는지에 관해 정부가 현장조사나 모니터링을 실시한 사례는 전무하다.

수출 과정에서 최루탄의 평화적 이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등 통제체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관계 법령 개정은 물론 현행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통제를 강화하려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2. 한국산 경찰무기 수출 및 남용 실태

(1) 한국산 최루탄 수출 상황

2015년부터 2024년 6월까지 한국은 35개국에 최루탄 약 1122만 발을 수출했다. 오만, 튀르

키예, 이라크 같은 중동 국가들, 인도네시아, 필리핀 같은 아시아 국가들뿐만 아니라, 세네갈,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와 페루 같은 중남미 국가들까지 세계 곳곳으로 최루탄을 수출하고 있다. 팔레스타인에 대한 군사 점령과 학살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기소를 당한 이스라엘 또한 한국산 최루탄의 수입국이다.

한국이 최루탄을 수출하는 35개국 중에 31개국(89%)은 프리덤하우스가 2022년 억압적 정권(비자유국 또는 부분자유국)으로 분류한 국가이다. 다시 말하면, 한국산 최루탄이 시민들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을 침해하는데 쓰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국가들이라는 뜻이다. 자유국으로 분류된 나머지 4개국 중에는 팔레스타인 점령지에서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사용하는 이스라엘도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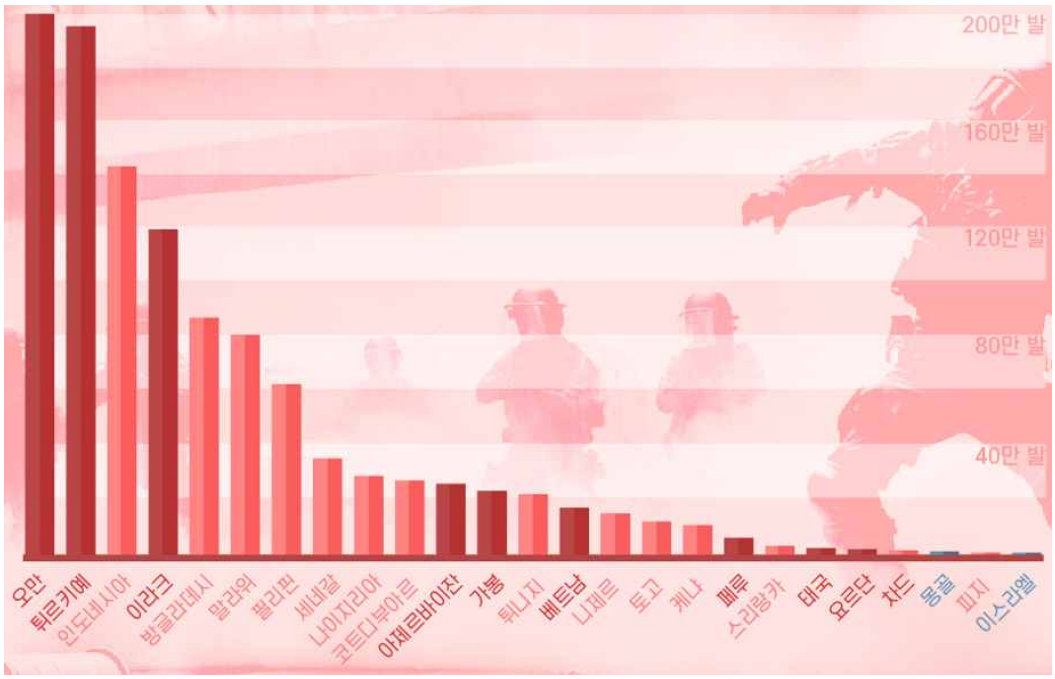

2015~2024년 한국의 국가별 최루탄 수출 현황

수출량이 가장 많은 나라부터 꼽아보면 오만(200만), 튀르키예(196만), 인도네시아(144만), 이라크(120만) 순이다. 각국의 경찰무기 수출과 수입, 사용을 감시하고 있는 경찰무기 감시 단체인 오메가연구재단의 활동가가 납품비리가 의심된다고 지적했을 정도로 국가당 수십만, 수백만에 달하는 수출량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2) 한국산 경찰무기 남용 현황

지노모터스가 만든 물대포가 2010년과 2013년에 태국으로 수출되었고, 2020년 10월 16일 태국 경찰은 물대포와 최루가스를 사용하여 군부 쿠데타에 맞서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평화적 시위를 펼친 태국 시민들을 강제 해산했다. 이날 강제 해산 작전에 동원된 두 대의 살수차가 바로 지노모터스의 제품으로 65미터가 넘는 사거리와 12,000리터 이상의 물탱크를 탑재하고 있고 고주파 앰프를 탑재하거나 염료를 혼합해 분사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 태국의 학생운동가

네티윗 초티팟파이살은 “의도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한국 정부는 결과적으로 태국 정부가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는 학생들과 시민들을 탄압하는 데 일조”했다고 이야기한다.

300명이 넘는 사망자를 기록한 2024년 여름의 방글라데시 민주화 시위에서도 한국씨엔오테크가 만든 최루탄이 쓰였고,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2022년 스리랑카의 민주화 시위에서도 대광화공이 만든 최루탄이 시위 진압에 사용되었다. 그 밖에도 2011~2013년 바레인, 2013~2014년 튀르키예, 2019년 인도네시아, 2021년 미얀마, 2022년 이란, 2023년 페루, 2024년 케냐 및 토고에서 시위 유혈 진압에 한국산 최루탄 및 최루탄 발사기가 사용된 것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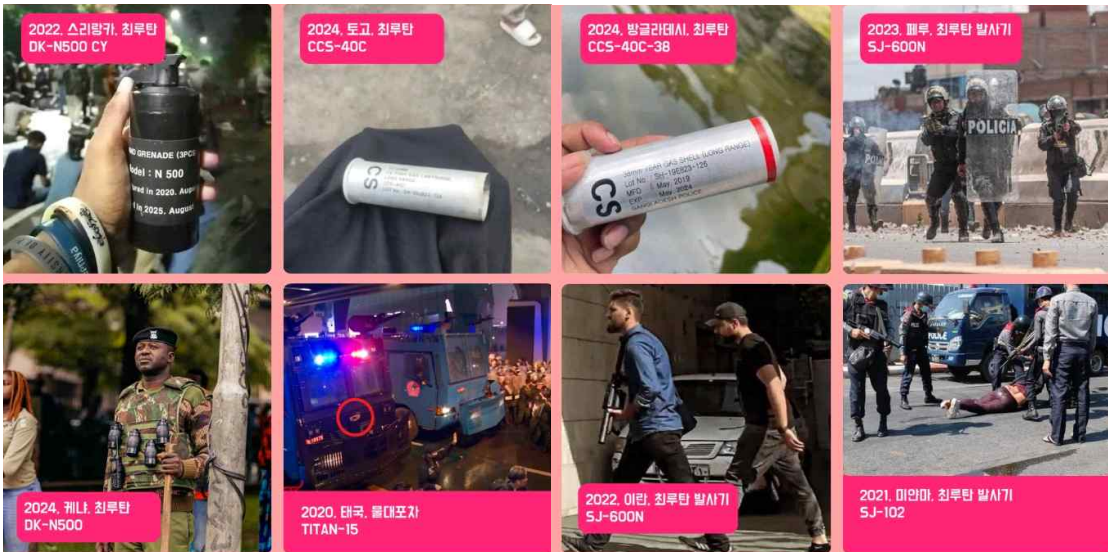

해외 시위 현장에서 발견된 한국산 경찰무기

지금까지 해외에서 최루탄과 물대포 등 한국산 경찰무기를 동원한 시위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쳤고, 2011년 이후 적어도 80명이 최루탄 사용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3) 치안산업박람회에 전시된 고문 도구

2019년부터 인천 송도에서 매년 ‘국제치안산업대전’이라는 이름의 치안산업 박람회가 열린다. 치안산업대전은 경찰청과 인천광역시가 주최하는 행사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경찰청, 조달청 등 정부 부처가 후원한다. 치안, 보안, 안전에 관한 최첨단 기술과 장비가 소개되고, 구매 담당관들과 민간바이어, 군, 소방, 해경,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종사자들이 교류하며 치안장비를 거래한다.

2024 국제치안산업대전은 30개국 83명의 해외 바이어를 초청했고, 역대 최대 규모인 205개사가 참가했으며, 총 458건의 상담을 통해 4억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 실적이 발생했다.

전쟁없는세상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현장조사 결과 2024 국제치안산업대전에서 유엔 특

별보고관이 금지 품목으로 지정한 엄지수갑, 전기충격봉을 비롯해. 규제 권고 품목들이 다수 전시되었다. 이 품목들은 유엔 고문 및 그 밖의 잔인하거나 비인도적,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2023년 8월 발표한 법 집행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무기나 장비들의 국제적 거래에 대한 보고서에서 금지 및 규제 권고 품목으로 지정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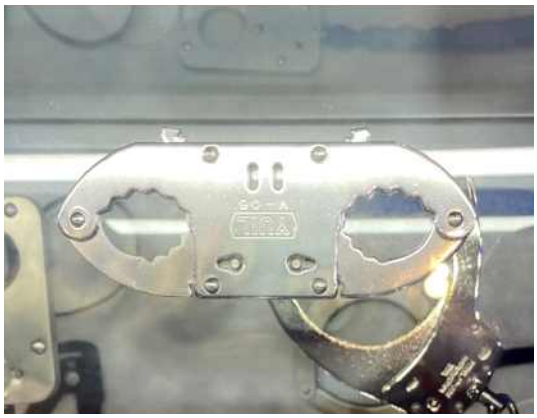

엄지수갑(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과 전기충격봉(사진: 전쟁없는세상)

시민에게 겨눠진 무기:
경찰무기 수출과 경찰 무력 사용에 대한 공론장

발행일 2025. 7. 21
발행처 전쟁없는세상
후　원 하인리히뵐재단 동아시아사무소